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1,220,000	16,236,600
일반회계		451,320,000	13,539,600
특별회계		89,900,000	2,697,000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54,600,000	1,638,000
	수도사업특별회계	17,700,000	531,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900,000	1,107,000
	기타특별회계	35,300,000	1,05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294,000	188,8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17,000	75,51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32,000	18,9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65,000	55,9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39,000	82,170
	치수사업특별회계	19,390,000	581,700
	기반시설특별회계	575,000	17,25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988,000	29,6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11,47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